

충청북도 수입증지 조례등 중 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내부위원회

1994. 9. 9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제출일자 : 1994년 8월 30일

회부일자 : 1994년 8월 30일

다. 상정일자 : 제 105 회 임시회

. 제 1 차 내무위원회 (1994. 9. 9.)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한철환)

가. 제안이유

- 민원신청서식중에는 우리의 역사적 배경등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기재사항의 중복, 강압적인 어귀, 서식의 복잡, 용어의 난해등으로 일반국민이 불편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며,

- 따라서 민원신청시 수차 전화문의를 하여야 하거나, 관련부서를 방문하거나, 신청서 작성의 착오로 재작성을 요구하는 등으로 시간적, 경제적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으로,
- 민원행정규제 사무에 대한 전면 재검토정비로 불합리한 사항은 누구나 알기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서식을 개선하여 누구나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 수입증지 조례등에 규정되어 있는 신청서식 중 신청인의 “생년월일, 성별, 주민등록번호”를 중복작성하게 되어 “주민등록번호”만 작성하도록 하였고,
- 대지 및 건물의 면적을 “평, m²”로 구분작성 요구됨에 “평”과 불필요한 “본적” 작성란을 삭제하였으며,
- “기입할것, 하지말것, 첨부할것, 증명함.”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어휘를 “기입하십시오, 하지마십시오, 첨부하십시오, 증명합니다.” 등 부드러운 경어로 변경하였으며,
- 많은 민원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“상병명”을 “부상 또는 병명”으로 “장제보상”을 “장례보상”으로 “검체명”으로 하는등 민원인이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고,
- 신분변동 및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본인의 진실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과의 대조확인이 필요할 경우 이외에는 “자기의성명 또는

손가락도장”으로 인장에 갈음하여 언제든지 누구나 신청이 가능
하도록 하였으며,

- 민원행정서식 중 다른서식과 내용이 중복된 서식은 폐지코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우 병 수)

충청북도 수입증지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
현행조례로 규정 시행하고 있는 민원행정 서식 중 31개서식에 대해 민원
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서식의 중복되는 기재사항, 행정일변도
적인 어려움이나 용어등을 삭제 또는 교정하여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
있도록 행정서식을 재정비 함으로서

국민편의 증진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및 민원 행정개선을
위한 개정안으로써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론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사결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6인, 찬성 6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. 충청북도 수입증지 조례등 중 개정조례(안)

. 신구 조문 대비표